

장학금 지급규정

財團
法人

禎山獎學財團

제1조 【목 적】

재단법인 정산장학재단(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제반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자】

본 법인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본 법인이 지정하는 4년제 대학 또는 대학교,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사상이 건실하며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우선한다.

제3조 【장학생 수 및 지급액】

본 법인이 지급할 장학금 금액총액, 장학생 수, 매인당 지급액은 본 법인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조 【지급기간】

장학금 지급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간으로 하되 소속학교장이 동일한 대상자를 계속 추천할 때는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장학생의 선정】

장학생의 추천은 본 법인이 지정하는 4년제 대학 또는 대학교, 전문대학 및 고등학교의 장에서 위임하고 그 추천에 의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본 법인이 선정한다. 단,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에 의하지 않고 본 법인이 직접 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학생의 추천】

본 법인으로부터 장학생의 추천의뢰를 받은 소속학교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타 장학금이나 이와 유사한 학비감면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자(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은 예외) 중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 【장학생 추천절차】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본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 추천자는 1, 2, 3, 4, 5, 6, 7호 제출)

1. 추천서 (제1호 서식)
2. 장학금 지급원서(사진부착) (제2호 서식)
3. 성적증명서
4. 서약서 (제3호 서식)
5. 주민등록등본
6. 보호자의 재산세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조서)
7. 장학금 수령을 위한 계좌 확인서 (제5호 서식)
8. 장학금 계속 지급 추천서 (제4호 서식, 계속자에 한함)

다만, 계속 추천 장학생에 한해서는 3호, 7호, 8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제8조 【장학생 선정통지】

선정된 장학생은 소속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한다.

제9조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금은 매기 본인, 친권자, 후견인에게 본 재단 사무국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학중인 학교로 송금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장학금의 계속지급】

1. 소속학교의 장이 장학생으로 계속 추천할 때에는 제4조의 지급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전 항의 경우 제7조의 소정의 구비서류 제출시에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대신 장학금계속지급추천서(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금의 지급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소속학교에서 퇴학, 정학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학업을 태만이 하거나 또는 다른 사정으로 취학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휴학, 군입대,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4. 타 장학금이나 학비감면 혜택을 받은 자
5. 기타 본 법인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자

제12조 【장학생의 신상이동 통지】

본 법인 장학생 중 제11조의 해당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학교의 장은 즉시 본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장학생의 교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중지된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교체학생을 추천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와 함께 장학생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본 법인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